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도

- 실증기간 종료 후 연구성과물의 생산기술연구원 소유권 양도 협약 체결... 기술 권리 이전 요구도
- 양이원영 의원 “피땀흘려 일구어낸 중소기업 기술, 공공기관 탈취 시도 경악”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민간 중소기업의 생산인프라와 기술을 빼앗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첨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시 발신 공문에 따르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로부터 ‘사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체 측은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10조에 따라 영리기업의 기반조성 사업 참여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6억 원의 민간부담금 납입의사를 표했으나, KIAT는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삭제 예정이라는 이유로 재차 거부했다.

KIAT는 업체 측에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 업체가 구축한 인프라를 공공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 사업기간 종료 후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이전까지 강요했던 사실이 첨부된 합의서 초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업체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한 연구를 지속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이 업체의 참여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술력을 정부 주도 실증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명목으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탈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기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기술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중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피땀흘려 일궈낸 기술력을 탈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민간 대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자료1 : 울산시-중기부/산업기술진흥원 공문]



친환경 수소 도시, 울산

울 산 광 역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인정 및 협약체결 협조 요청

1.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본 특구사업 기획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고품위탄산칼슘 생산 인프라 구축·운영사업자(기반조성사업자)로 관련 핵심기술(Slag2Pcc)을 보유한 관내 기업인 (주) 을 특구사업자에 포함하여 특구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해 11월 심의를 거쳐 본 특구가 최종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관련규정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 ③사업화지원 및 기반조성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된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기반조성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엔 영리기업도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리기업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주) 민간부담금 : 6억원(지정당시 사업계획서)

3. 그러나 본 특구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구사업자((주))를 불인정하여 사업추진(협약체결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KIAT의 (주) 불인정 사유('20. 12월 메일통지) 》

- 위 관련규정은 사문화된 규정('21. 8월 삭제 예정)이므로 영리기업인 (주) 은 기반조성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 대안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실증기간('21.1.1. ~ '22.12.31.) 이후 총괄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양도 조건(공중서 첨부)으로 실증기간에 한해 (주) 인정 가능함.

4. KIAT의 대안 제시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지역본부)에서 인프라 양수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원의 총괄위원회 승인과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승인절차 등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검토되어 최종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승인여부 불투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그러므로 본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재정지원사업운영요령 제10조 3항"에 따라 (주) 과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장



수신자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규제자유특구과장), 한국산업기술평화원장

주무관

과학기술담당
사무관

미래산업과 전결(2021.1.26.)
장

협조자

시행 미래산업과-700 (2021. 1. 26.) 결수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전화번호 052-229-2893 팩스번호 052-229-3149 / ululy@korea.kr / 비공개

부패없는 청문, 열린 울산

[#. 첨부자료2 : 생산기술연구원-업체 간 합의서 초안]

합 의 서

울산 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 인프라2(“고부가 제품용 탄산칼슘 제조 플랜트 구축”,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과 참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라 한다)은 본 사업이 규제자유특구재정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후속업무를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1. (사업비부담) ①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② 만약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 [] ”이 모두 부담한다.

2. (장비 시설의 반입/반출) 사업기간 중 Slag2PCC에 반입되는 모든 장비와 설비는 생기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및 설비를 Slag2PCC에 반입하려할 경우 생기원에 사전고지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Slag2PCC에 반입된 모든 장비나 시설은 생기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이를 반출할 수 없다.

3. (성과물의 소유권 이관) ①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 [] ”은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 (종료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3개월 이내에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 및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 일체를 “생기원”으로 소유권을 양도한다. 양도대상 주요 유형적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유형적 성과물]

1.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전환탄산화물인 탄산칼슘의 제조 시스템
(이하 Slag2PCC라 한다.)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장(울산 남구 처용로 524 일원) 내 본 사업의 사업비로 설치된 시설로 산업부산물 내 칼슘(Ca)과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CO₂)를 반응시켜 탄산칼슘을 합성/생산하는 플랜트
2. Slag2PCC 내 품질확인을 위해 도입된 분석장비
3. 기타 본 사업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된 시설 및 유틸리티
(토목공사, 골조 강화, 운영실 및 기타 악세서리)

② 유형적성과물 중 성과활용과 관련 없는 장비라고 생기원이 판단할 경우 “생기원”은 이를 양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술이전계약) ① 본 사업의 최종평가결과가 보통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규제자유특구재정지원사업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은 “생기원”과 Slag2PCC를 활용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요령 39조 ②항에 정하는 바에 “생기원”은 “ ” 이외의 다른 기업에게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산정과 납부기간 등 세부사항은 운영요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본 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이 지나고 네오그린의 기술료가 완납된 경우 “생기원”은 Slag2PCC 관련 시설과 장비의 소유권을 “ ”에 이 전한다.

5. (Slag2PCC시설의 운영 및 성과보고) ① 본 사업이 종료되고 “ ”과의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면, “생기원”은 기술이전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Slag2PCC시설의 운영을 “ ”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 ”은 Slag2PCC시설의 운영과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며, 이러한 책임과 권한은 해당 설비의 소유권이 “ ”에 넘어갈 때까지 지속된다.

② []은 성과활용기간(2023.01.01.~2025.12.31., 3년) 중 발생하는 Slag2PCC시설의 활용성과를 1년 단위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생기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 활용현황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실패한 경우의 기술이전계약)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라도 “[]”이 Slag2PCC를 활용하려 할 경우, “생기원”과 “[]”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7. (협의사항) 본 합의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운영요령,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8. (손해배상책임)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와 배상금은 합의서를 위반한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합의서는 3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생기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년 12 월 일

주관기관

주식회사 [] / [] (인)

주소 : []

주관기관책임자 [] (인)

참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이낙규 (인)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참여기관책임자 송호준 (인)